

獨學 學位취득제와 大學 社會教育의 과제

黃 應 淵
(梨花女大 平生敎育院長)

지난 3월, 148회 임시 국회에서 '獨學에 의한學位取得 法案'이 통과됨에 따라 문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즉 문교부는 동법의 施行令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중앙교육평가원 안에 독학 시험 기획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법안을 놓고 일부의 비판과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국회는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교 졸업자에게 自學·自習이나 다양한 敎育機關과 媒體를 통해 학습한 후 國家機關의 시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한다"는 입법 취지를 수용하여 일부 字句 수정을 거쳐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①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平生敎育 理念을 구현하고, 개인의 自我實現과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② 학위 취득 시험은 문교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③ 段階的 課程認定試驗에 대한 응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학위 취득 시험은 ▲ 교양과정 인정 시험 ▲ 전공기초과정 인정 시험 ▲ 전공심화과정 인정 시험 ▲ 학위 취득 종합 시험의 4단계로 한다. ⑤ 학위는 문교부장관이 수여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문자 그대로 대학 학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미 많은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는 平生敎育機關을 비롯하여 기업체의 연수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사회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獨學에 의한學位取得 課程과 연계시켜 절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개편하여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사회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美國에서는 1869년에 하버드대학의 여름 계절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英國에서는 1873년에 캠브리지대학이 University Extension Program을 개설

한 이후 옥스퍼드대학과 런던대학으로 퍼져 나갔으며, 韓國에서는 1970년대초부터 계명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각 대학의 특색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社會教育法이 제정되어 대학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義務條項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제정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법에 따라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증대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회에 대학의 社會教育 기능을 발전·정착시키기 위한 現實的 課題에 대하여 몇 가지 거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모든 大學人(대학 당국자·교직원·재학생·동창)들은 대학의 사회교육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意識의 轉換이 있어야 하겠다. 현대의 대학은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라는 본래적 기능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社會奉仕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일반 사회인들의 '學習의 場'으로 개방하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들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동 제도에 의하여 시행되는 여러 단계의 인정 시험과 그 결과로 발급되는 학위가 일반 대학 못지않게 公信用을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多樣化하여 교양 중심의 과목뿐 아니라 獨學課程과 연계되는 전공 기초 과목이나 전공 심화 과목들도 개설하여 소정의 조건을 갖추게 한 다음, 응시 과목에서 면제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학의 사회교육 기관 관계자와 사회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와 정부측의 '독학에 의한 학위 관리 기구(가칭)'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평생교육의 체제를 확립하고, 학위 취득의 기회를 다양화하면서도 거기에서 전개되는 교육의 質的 秀越性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劃期的 내지는 構造的 改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이 업무를 담당할 행정 부서의 上向 改編이 요청되며, 독학에 의한 학위 관리 기구의 人的인 구성과 財政的 지원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모처럼 계획되는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과 문교부 내지는 독학 학위 관리 기구와의 대화 창구를 상설화하여 예상되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와 같이 亂麻처럼 얽혀 있는 교육 관계 법령을 평생교육 체제에 적합하도록 平生教育法을 교육 기본법으로 하고, 그 하위법으로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직업교육법, 교육재정법 등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하다. *